

협약서

서울특별시 성동구와 한국예술고등학교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활용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활용에 있어서 협약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.

① 성동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청소년의 문화활동 제공에 관련된 제반사항 협조
2.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정기적 개최시 지원
3. 왕십리권역 '성동 청소년 문화존(어울림마당)' 운영
4. 청소년 문화육성 경연장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
5. 성동구 산하 공연장, 제반시설 대여시 활동 지원

② 한국예술고등학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청소년의 문화활동 제공에 관련된 제반사항 협조
2.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정기적 개최에 대한 학생들의 재능기부
3. 사전 협의된 인력 및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사업 협조

제3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결정한다.

제4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협의 하에 재 연장한다.

제5조(협약변경)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협약서가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단, 협약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.

1. 협약기관이 업무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
제6조(신의성실의 원칙) 협약기관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하고 존중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정하고, 본 계약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.

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, 위 사항의 확인을 위해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. 11. 10.



구청장 정 원 오



한국예술고등학교

교 장 공 성 민